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2006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소1655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C은 포천시 D, E 양지상 철골조샌드위치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다. C은 주식회사 F(대표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다.

라.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게 ‘주식회사 F가 C에게 이주비를 요구하면서 퇴거를 앓고 있다’, ‘원고가 빨리 입주하려면 주식회사 F에 이주비를 주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비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C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원고에게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과는 다르게, 위 영수증에는 H(원고의 남편 이름으로 추정함), C 귀하, 발행일 2009. 10. 26., 일금 칠백만 원정,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I) 권리금조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식회사 F (대)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C은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9. 11. 1.로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가 최근에 C에게 위와 같이 교부하였던 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니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아. 이러한 경과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7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다툼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중개인 J는 2009. 10. 26.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전임차인인 주식회사 F에게 권리금 7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알려 주었고,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에게 700만 원이 지급되어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인 2009. 10. 27.에 피고에게 계약금을, 2009. 11. 6.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송금하였고 2009. 11. 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주식회사 F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금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나머지 점들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